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24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11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 컨설팅”이란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대책 수립, 위험요인평가, 모의해킹,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컨설팅 수행실적”이란 제1호에 대한 수행실적을 말하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컨설팅 수행실적”이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관제, 장비 납품 등 부가적인 실적은 실적금액 산정 시 이를 제외한다.
3. “최근”이라 함은 지정 또는 사후관리 신청 마감일 직전 분기 말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3조(기술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 심사서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라 함은 별표 1의 각 호와 같다.

제4조(제출서식 등) ① 규칙 제10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규칙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 또는 회계서류는 지정 신청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규칙 제10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설비 보유현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 규칙 제10조제1항 제7호 및 제3조에 따른 심사서류의 제출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절차)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지정 심사를 위한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 및 사후관리 심사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별표4 또는 별표5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

2. 그 밖에 전문가의 검토와 판단이 요청되는 업무(규칙 별표1의 기술인력의 자격확인 및 별표1의 컨설팅 수행실적의 사실 확인을 포함한다)

② 기술심의위원회는 지정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기술 분야에 근무한 자

3.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 (정보통신 관련학과의 범위) 규칙 제8조 제1호 외에 수학과 및 산업공학과, 경영정보학과를 포함하며 정보통신 관련 학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한다.

제8조(정보보호 관련 국내외자격) 규칙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비고 제4호의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2. 정보보호전문가(SIS: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3.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4.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5. 정보시스템감리사
6.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7.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제9조(업무 수행능력 심사 기준 점수) 규칙 제8조 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심사에서 기준 점수 이상"이라 함은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규칙 제8조 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컨설팅수행실적의 인정요건) ①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한다.
2. 컨설팅의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② 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비율로 실적을 배분한다.

제12조(보안대책) 규칙 제8조 제5호 라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보안대책”이라 함은 별표 3와 같다.

제13조(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규칙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법 제23조 및 규칙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준수 여부를 사후관리 심사한다. 다만, 규칙 제8조제4호는 별표 2의 업무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중 사후관리 심사 세부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을 것
② 사후관리 심사를 수행하는 자는 규칙 제8조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기술인력 변동 신고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지정일 또는 직전 사후관리 결과통보일 기준으로 매년 실시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규칙 제10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제3조 관련)

	구 분	제 출 서 류
인력 기준에 필요한 제출 서류	1. 관련 자격, 관련 학력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가.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나. 기술자격증 또는 정보보호 국내외 자격 사본 다. 경력증명서(근무부서 또는 담당업무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라. 재직증명서 마. 필요시 경력 및 실적 확인기관이 발급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경력 및 실적증명서
업무수행 능력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2. 업무수행능력심사평가표 각호의 세부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 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술인력 보유현황 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임원 명단 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설비보유현황 마.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제5-1호서식에 의한 업무수행능력심사자료 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경력 및 실적증명서 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기술자산 보유목록 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술인력 교육관리 카드 자. 기술심의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발표할 프레젠테이션자료

비 고

1. 위 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당해 기술인력에 해당되는 서류 각 1부를 제출한다.
 - 가. 규칙 별표 1의 관련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경우 위 표 제1호의 서류
2. 위 표 제1호마목의 "경력 및 실적 확인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정보보호에 전문연구능력이 있는 다음의 연구기관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포함한다)
-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분야의 전문연구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비영리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라.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회원사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업체

-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
- (2) 최근 3년간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컨설팅수행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 (3) 법인세납부실적이 있는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업체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통합사업분야의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바. 그 밖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업체

-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 (3) 은행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 (4) 대형컴퓨터시스템, 산업용 전자제어시스템(DCS·SCADA), 초고속정보통신기기를 대규모로 사용하거나 이의 설계·생산·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을 주된 사업분야로 하는 업체
- (5) 컴퓨터시스템 또는 정보통신기기의 제조 및 공급을 주된 사업 분야로 하는 업체

사. 가목 부터 바목에 준하는 기관 또는 업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급 기술인력의 경력 또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업체

3. 위 표 제1호다목 및 제2호가목과 관련하여 기술인력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해줄 업체가 폐업·도산·합병 등으로 그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에 갈음하여 당해 기술인력의 재직여부와 담당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별표 2]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제10조 관련)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 지표	지정심사		사후관리 심사	
			배점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세부 평가 기준
1. 경험 (35)	최근 3년간 컨설팅 수행실적	계약 금액 총액	25	· 10억원 이상: 배점의 100% · 10억원 미만: 배점의 X% ※ $X = (\text{계약금액총액}/10\text{억원}) \times 100$	35	· 3.3억원 이상: 배점의 100% · 3.3억원 미만: 배점의 X% ※ $X = (\text{계약금액 총액}/3.3\text{억원}) \times 100$ ※ 최근 1년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컨설팅 수행실적 기준
	최근 3년간 신청업체에서 컨설팅 수행실적이 2회 이상 있는 기술인력의 비율	비율	10	· 기술인력 모두 실적이 있는 경우: 배점의 100% · 기술인력 모두 실적이 있지 않은 경우: 배점의 X% ※ $X = (\text{실적이 있는 기술인력의 수}/\text{총 기술인력 수}) \times 100$	-	제외
2. 전문화 정도 (35)	중급 이상의 기술인력 비율	비율	10	· 60% 이상: 배점의 100% · 50% 이상: 배점의 80% · 40% 이상: 배점의 50% · 30% 이상: 배점의 30% · 20% 이상: 배점의 10% ※ $X = (\text{중급 이상 기술인력의 수}/\text{총 기술인력의 수}) \times 100$	20	지정 심사와 동일
	기술인력의 재직비율	비율	10	· 60% 이상: 배점의 100% · 50% 이상: 배점의 80% · 40% 이상: 배점의 50% · 30% 이상: 배점의 30% · 20% 이상: 배점의 10% ※ $X = (\text{최근 3년 이상 재직자 수}/\text{총 기술인력 수}) \times 100$	-	제외
	총매출액대비 정보보호분야 매출액의 비율	비율	10	· 배점 × 총 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의 비율(%)	-	제외
	교육지원체계 적합성	비율	5	· 최근 2년간 기술인력이 모두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배점의 100% · 최근 2년간 기술인력이 모두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배점의 X% ※ $X = (\text{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기술인력 수}/\text{총 기}$	15	· 최근 1년간 기술인력이 모두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배점의 100% · 최근 1년간 기술인력이 모두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배점의 X% ※ $X = (\text{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기술인력 수}/\text{총 기}$

				술인력의 수) × 100 ※ 정보보호 분야 및 정보통신 분야 교육 중심 (일반 교양교육 제외)		술인력의 수) × 100 ※ 정보보호 분야 및 정보통신 분야 교육 중심 (일반 교양교육 제외)										
3. 신뢰도 (10)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등급	5	· AAA ~ A- : 배점의 100% · BBB+ ~ BBB- : 배점의 80% · BB+ ~ BB- : 배점의 60% · B+ ~ B- : 배점의 40% · CCC+ 이하 : 배점의 20%	5	지정 심사와 동일										
	정보보호 인증기업	인증 여부 평가 등급	5	· 인증기업: ISMS 또는 ISO27001 ·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결과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평가등급</th> <th>배점</th> </tr> <tr> <td>AAA~AA</td> <td>배점의100%</td> </tr> <tr> <td>A</td> <td>배점의80%</td> </tr> <tr> <td>BB</td> <td>배점의60%</td> </tr> <tr> <td>B</td> <td>배점의40%</td> </tr> </table>	평가등급	배점	AAA~AA	배점의100%	A	배점의80%	BB	배점의60%	B	배점의40%	5	지정 심사와 동일
평가등급	배점															
AAA~AA	배점의100%															
A	배점의80%															
BB	배점의60%															
B	배점의40%															
4. 기술 개발 실적(5)	최근 3년간 정보보호 분야 정부과제 수행실적	정부 지원 금액	5	· 3억원 이상: 배점의 100% · 3억원 미만: 배점의 X% ※ X = (정부지원금총액/3억원) × 100	5	지정 심사와 동일										
5. 종합 심사 (15)	정보보호 컨설팅 방법론	비계량	15	· 방법론의 체계성 · 일관성 · 방법론의 타당성 · 적합성 · 방법론의 독창성 · 위험분석의 타당성 · 적용사례를 통해서 본 방법론의 우수성 ※ 보유 활용중인 기술적 / 관리적 기술도구 포함	10	· 방법론의 체계성 · 일관성 · 방법론의 타당성 · 적합성 · 방법론의 독창성 · 위험분석의 타당성 · 적용사례를 통해서 본 방법론의 우수성 ※ 보유 활용중인 기술적 / 관리적 기술도구 포함										
					5	· 지정심사 또는 직전년도 사후 관리 심사 이후 방법론 개선도										
6. 기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업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확인 여부	가점	※ 벤처 확인기업: 가점 5점 ※ 이노비즈기업 확인 기업 : 가점 5점	가점	지정 심사와 동일										
	최근 3년간 조달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가 제한을 받은 기간	입찰 참가 제한 월수	감점	※ 제한월수 1월당: 감점 0.5점	감점	지정 심사와 동일										

비 고

1. 위 표 각 세부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세부평가기준 중 신뢰도 항목은 기업신용평가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배점기준은 붙임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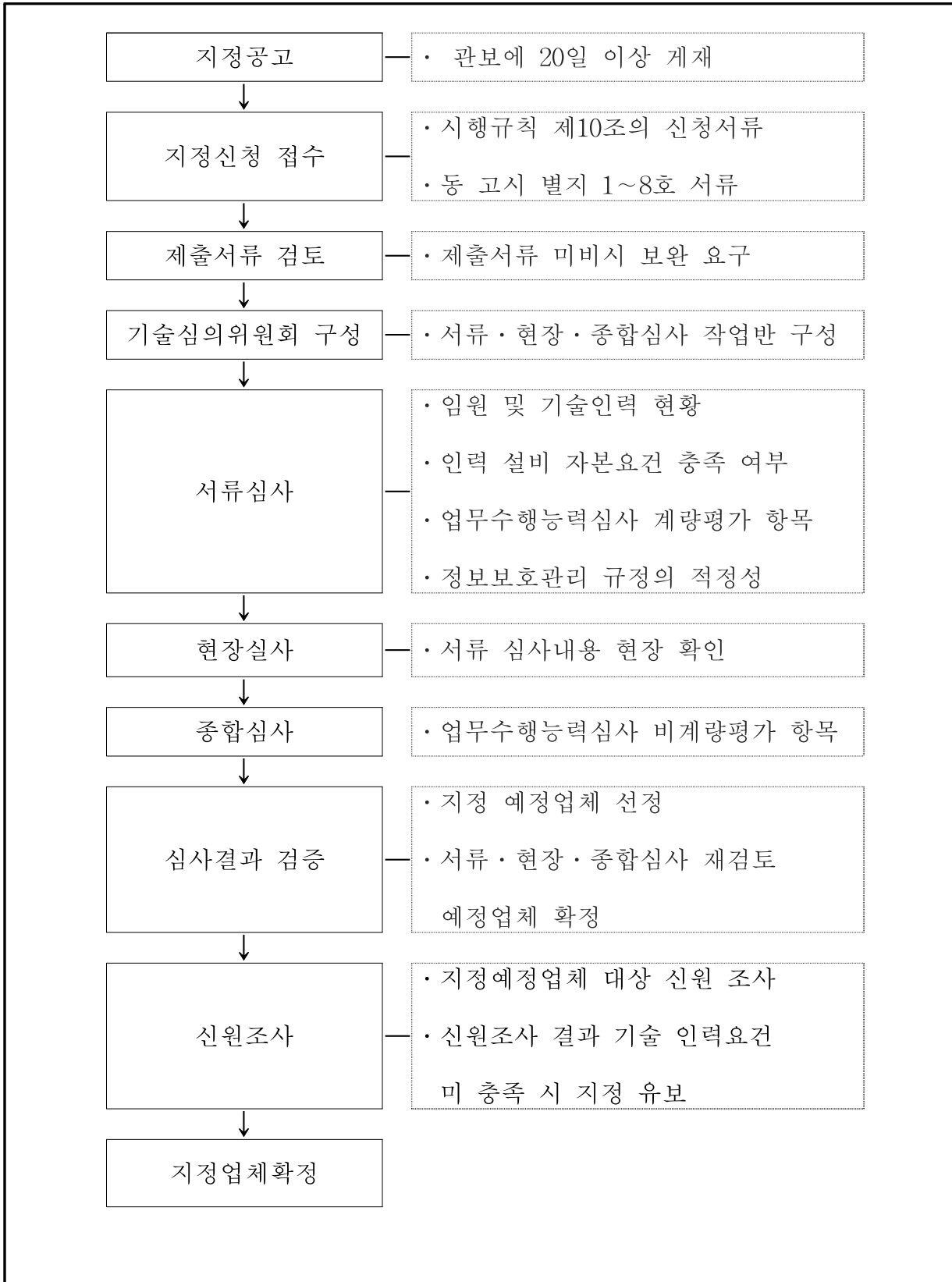
[별표 3]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분야 보안대책(제12조관련)

주요 내용	비고
1. 취약점분석업무(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업무수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구역은 이중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기술인력이 아닌 자의 출입이 제한되어야 한다. 2. 취약점분석자료(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업무에 수반되는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를 처리·전송·저장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위험분석에 따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트북컴퓨터 기타 휴대용 정보처리기에 대한 통제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업무수행구역 및 설비에대한 보안대책관련
3. 기술인력이 변동되는 경우의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와 신원조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기술인력이 관계법령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를 포함한 제반의무를 숙지하고 이의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기술인력을 채용할 때의 적격 심사와 퇴직할 때의 퇴직 관리를 위한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정보보호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및 처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7. 기술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업체 내부 및 외부의 정보보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력에 대한 보안대책관련
8. 취약점분석자료 및 컨설팅 기술자료(도구포함)를 보안등급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9. 기술인력이 아닌 자는 취약점분석자료에 접근·열람·수집·편집·반출·폐기하지 못하도록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전송·보존하는 취약점분석자료에 대하여 위험분석에 따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 서면, 도면, 마이크로필름·전산출력물 등 출력물 형태의 취약점분석자료에 대한 보관·복사·배포·폐기 등에 관한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서 및 전산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관련
12. 정보보호에 관한 업체의 기본방침을 대표자가 서면으로 공표하고 기술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13. 취약점분석업무에 대한 위험분석 및 통제대책의 관리·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14. 사업자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정보보호 관리규정에 대한 검토 및 변경절차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관리규정에 따른 제반의무의 이행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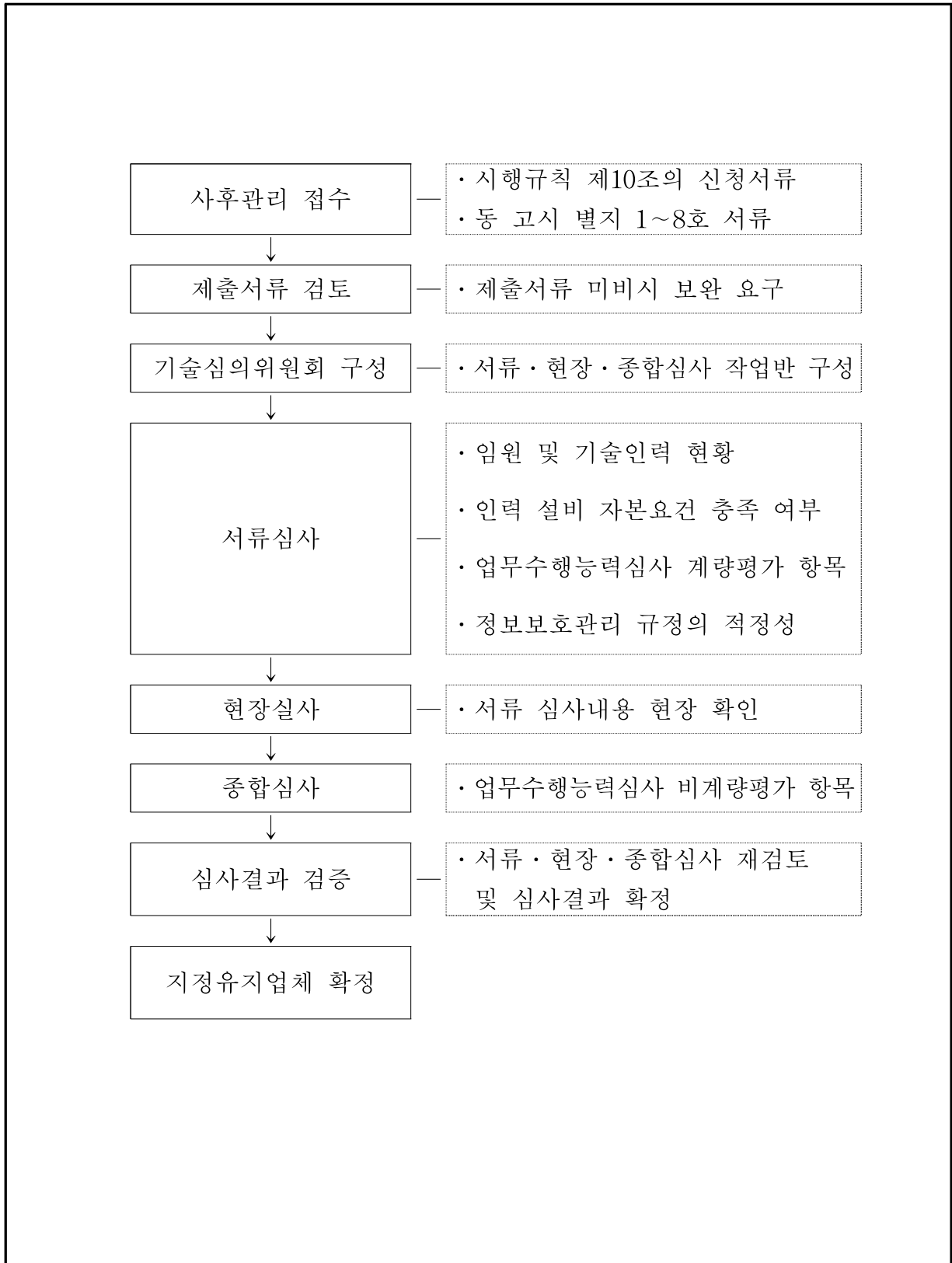
[별표 4]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절차



[별표 5]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사후관리 절차



[별지 제1호서식]

컨설팅 수행 실적 명세서						
업 체 명						
기 간						
컨설팅수행실적 총계		의 건 (총 천원)				
일련 번호	프로젝트명 (대상기관 (기업)명)	수행기간 (총 참여 M/M)	과제 책임자	금액 (천원)	참여인력 (개인별 참여율 (M/M))	비고 (기반시설 여부/ 컨설팅 지분 등)

[별지 제2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최초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신청)일부터 기술인력 신고 순으로 연속기록(퇴직자포함)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기술인력 총수(현재)			초급()명, 중급()명, 고급()명, 특급()명				
일련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입사일	신고일	퇴사일	인력구분 (초급/중급/ 고급/특급)	비고
비고							
1. 「인력구분」란에는 당해 기술인력이 충족하는 규칙 별표1 각호의 번호를 기재한다(이 경우 규칙 별표1 각 란을 초급보유, 초급미보유, 고급보유, 고급미보유, 고급예외 등으로 구분하고 "초급보유1", "고급예외가목" 등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임원 명단				
※ 법인등기부등본 상 현 임원에 한하여 작성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직위	신고일	비고

[별지 제4호서식]

설비 보유 현황					
업 체 명 및 대 표 자 서명					
소 재 지					
구분	명칭	제조 회사	도입연월일	주요 기능	비고
			도입 가액		
가. 신원 확인 및 출입통제 설비					
나. 업무수행 및 지원설비					
다. 기록 및 자료의 안전관리 설비					

[별지 제5호서식]

업무수행능력심사자료(최초지정)	
I. 총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의 비율	
(1) 지정신청직전 결산회기의 총매출액:	천원
(2) 지정신청직전 결산회기의 정보보호 분야의 매출액:	천원
(3) 총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의 비율:	%
II. 기술인력의 수	
(1) 최근 3년간 신청업체에서 컨설팅 수행실적이 2회 이상 있는 기술인력:	명
(2) 중급 이상의 기술인력:	명
(3) 최근 3년 이상 재직 중인 기술인력:	명
(4) 연 평균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기술인력:	명
III. 기 타	
(1)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여부 (○ , ×)	
(2) 조달관계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경험 여부 (○ , ×)	
비 고	
1. I 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지정신청업체 회계담당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계산내역을 첨부한다.	
2. 정보보호 분야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업무수행능력심사자료(사후관리)	
<p>I. 총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의 비율</p> <p>(1) 사후관리 신청직전 결산회기의 총매출액: 천원</p> <p>(2) 사후관리 신청직전 결산회기의 정보보호 분야의 매출액: 천원</p> <p>(3) 총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의 비율: %</p>	
<p>II. 기술인력의 수</p> <p>(1) 중급 이상의 기술인력: 명</p> <p>(2) 연 평균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기술인력: 명</p>	
<p>III. 기 타</p> <p>(1) 조달관계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경험 여부(○ , ×)</p>	
<p>비 고</p> <p>1. I 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지정신청업체 회계담당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계산내역을 첨부한다.</p> <p>2. 정보보호 분야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산한 금액으로 한다).</p>	

[별지 제6호서식]

경력 및 실적 증명서

※ 이 서식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심사에 활용됨

인적 사항	성명 (한자)	()	생년월일		
	주소				
경력 사항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p>당사 재직 시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증명기관 (직인)</p> <p style="text-align: right;">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p>					
실적 사항	컨설팅 프로젝트명	수행 기간	대상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비고 (계약금액)
<p>당사 재직 시 위와 같이 정보보호 컨설팅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증명기관 (직인)</p> <p style="text-align: right;">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p>					

[별지 제7호서식]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기술자산 보유목록						
업 체 명						
순번	기술자산명	기술자산 버전	용도/기능/ 응용분야	생성일	폐기일	비고 (공개용/상용/ 자체개발 여부)
비 고						
기술자산 관리방법: 시스템 구축 또는 매뉴얼 프로세스 등 기재						

[붙임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5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0